

제 846 호
1983. 1. 11

편집 : 공 보 관 권 영 호

전화 72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 통합발간실

전화 725-6090

시 보

차 례

○ 규 칙

제 2007 호 : 서울특별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중
개정규칙 3

제 2008 호 : 서울특별시공연장행 정치분기준규칙개정규칙 3

○ 고 시

제 15 호 : 주택개발을위한저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7

○ 공 고

제 11 호 : 케이·에스표시정지처분공고 8

제 12 호 : 도로공사계획공고 8

제 13 호 : 사회단체지부등록취소 9

공 보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1590

규 칙

서울특별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3년 1월 11일

서울특별시장 김성배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2007 호

서울특별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 6 조 제 1 호중 "2,000 원"을 "20,000 원"으로 하고 동조 제 2 호중 "3,000 원"을 "30,000 원"으로 하며 동조 제 3 호중 "5,000 원"을 "50,000 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공연장 행정처분 기준규칙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3년 1월 11일

서울특별시장 김성배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2008 호

서울특별시 공연장 행정처분 기준규칙 개정규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공연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 12 조 및 제 17 조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경영자, 공연자 및 출연자에 대해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내 공연장 경영자, 공연자 및 출연자에 적용한다.

제 3 조 (처분기준)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 4 조 (행정처분의 가중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별표위반 사항중 동시에 2개항목 이상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그중 중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단계보다 1단계 위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.

② 별표에 규정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을 받은후 3월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1단계 위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.

③ 행정처분을 받은후 3월이내에 처분항목과 다른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분 하여야 한다.

<p>1. 경고처분을 받은자가 다시 경고처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일의 공연정지 처분을 받는다.</p> <p>2. 경고처분을 받은자가 다시 공연정지에 해당되는 처분을 받을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처분기준에 1일가산</p> <p>3. 공연정지처분을 받은자가 재차 공연정지처분을 받을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처분기준에 2일가산</p> <p>제 5 조 (행정처분의 감면) 시장은</p>	<p>이 규칙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자가 공익상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히 기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1.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2. (경과조치) 이 규칙시행이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</p>
---	---

(별 표)

행 정 처 분 기 준

연번	위 반 사 항	처 분 기 준		
		1 차	2 차	3 차
1	공연신고 내용과 상위한 공연을 한때 (법제 17 조)	공연정지 1 일	공연정지 3 일	공연정지 5 일
2	심사에 합격한 각본 또는 대본의 내용과 상위한 공연을 한때 (법제 14 조의 2)	·	·	·
3	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외국의 공연물을 공연할때 (법제 19 조의 2)	·	·	·
4	공안 또는 미봉양속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때 (법제 17 조 5)	·	·	·
5	공연자 및 공연장 경영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때 (법제 22 조)			
	(1) 정액외의 요금을 받을때	·	·	·
	(2)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켰을때			

연번	위 반 사 항	치 준 기 준		
		1 차	2 차	3 차
	가. 20 명미만	경 고		
	나. 20 명이상 40 명미만	공연정지 1일		
	다. 40 명이상은 20 명초과시마다	1 일가산		
	(3) 각계층, 각등급별로 좌석의 정원에 달하였을때 입장권 발매창구에 만 원표찰 게시 불이행	경 고	공연정지 1 일	공연정지 3 일
	(4) 장내 흡연단속 불이행	.	.	.
	(5) 출입구, 비상구, 복도, 계단, 통로 또는 주위의 공지에 통행·피난의 장애물 방지.	.	.	.
	(6) 관람자가 출입하는 장소에 적당한 조도를 가진 동화시설 불비.	.	.	.
	(7) 비상구의 문호를 관람자가 곧 개방할 수 없는 시설을 한때	.	.	.
	(8) 합부로 연출자 또는 연기자를 관람석에 출입시키거나 관람자를 악실, 무대등에 출입시켰을때	.	.	.
	(9) 연출자 또는 연기자가 공연을 해하거나 풍속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언사나 행동을 한때	.	.	.
	(10) 당해 공연의 용에 공하는 각본 가요사대본, 설명 서등을 함시 비치하지 아니하거나, 관계공무원의 제시요구에 불응한때	.	.	.
	(11) 영사실에 해당기술자 이외의 자를 출입시켰을때	.	.	.
	(12) 미성년자 (18 세미만) 입장불가 공연물에 미성년자 입장			
	가. 10 명미만	공연정지 1 일		

연번	위 반 사 항	처 분 기 준		
		1 차	2 차	3 차
	나. 10 명 이상 20 명 미만 다. 20 명 이상은 10 초 과 시 마 다 (13) 문 화 공 보 부 장 관 허 가 청 또 는 신 고 수 리 청 이 명 령 한 사 항 위 반	공연 정 지 2 일 1 일 가 산		
	가. 당 해 공 연 물 프 로 그 램 이 외 의 상 품 선 전 및 판 매 행 위 (구 내 매 점 의 판 매 행 위 제 외)	경 고	공연 정 지 1 일	공연 정 지 3 일
	나. 미 성 년 자 입 장 불 가 공 연 물 의 입 장 불 가 표 찰 불 게 시	경 고	"	"
	다. 주 등 을 소 등 하 지 아 니 하 고 뉴 스 영 화 및 문 화 영 화 상 영	경 고	"	"
	라. 영 화 상 영 중 장 내 이 동 판 매 행 위	"	"	"
	마. 공 연 신 고 후 공 연 (상 영) 불 이 행	공연 정 지 1 일	공연 정 지 3 일	공연 정 지 5 일
	바. 1 일 전 의 공 연 신 고 불 이 행	경 고	" 1 일	" 3 일
	사. 공 연 신 고 전 공 연 일 자, 상 영 시 간 관 랫 료 등 의 명 기 광 고 (선 전) 위 반	"	"	"
	아. 공 연 광 고 (선 전) 시 미 성 년 자 입 장 불 가 공 연 물 에 대 한 입 장 불 가 표 시 불 이 행	"	"	"
	자. 우 대 권, 할 인 권 및 할 인 전 단 배 포 행 위 .	"	"	"
	차. 공 연 신 고 내 용 위 반	"	"	"
	카. 구 내 매 접 가 격 표 게시 불 이 행 및 상 품 가 격 (시 중 가 격) 위 반 판 매 행 위	"	"	"
	타. 기 타 관 제 행 정 관 청 이 명 령 한 사 항 불 이 행	"	"	"
	공 연 장 설 치 허 가 사 항 및 허 가 조 건 위 반 (법 제 12 조)	"	"	"

연번	위 반 사 항	처 분 기 준		
		1 차	2 차	3 차
	(1)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때 (2) 공연장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후 3월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허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공연장을 준공하지 아니한때 (3)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이상 휴장한때 (4)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허가조건에 위반한때	허가취소 허가취소 3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	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 <p>고 시</p> </div> <p>◎서울특별시고시제 15호</p> <p>“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인가”</p>		<p>축출, 소유자에게 개할 통보하고 관계도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관할구청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3. 1. 11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장</p> <p>가. 위 치 응암 2구역 3구획 243번지일대 응암 4구역 14구획 300번지일대</p> <p>나. 면 적 응암 2구역 약 892 평 응암 4구역 약 1,821.2 평</p>		
<p>1.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공고제 12호 (80.1.16) 및 시공고 제 330호 (82.7.24)로 공람한바 있는 응암 2지구 및 응암 4지구 일부 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제 41조 및 동법시행령제 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구역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한다.</p> <p>2. 관리처분계획 내용은 토지 및 건</p>				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1호

케이.에스표시 정지처분 공고

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규정에 의거
다음과 같이 케이.에스표시 정지 처
분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
따라 이를 공고한다.

1983. 1. 11

서울특별시장

허가번호 : 제 1316 호

허가일자 : 76.6.4

업체명 : 성광조명기업(주)

대표자 : 박 승 운

소재지 : 마포구 신정동 73-1

가. 도로공사 계획 조서

규격번호 : K S L 7604

품 명 : 고압수은램프

종류, 등급 : H P 400 W

처분기간 : 공고일로부터 3 개월

처분사유 : K.S 규격미달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2호

도로공사계획공고

1. 도로법시행령제 24 조의 3 및 도로
법시행규칙 제 17 조의 2 에 의거 도로
공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.
2. 관제도시는 동작구청 토목과에 비
치 열람케 한다.

1983. 1. 11

서울특별시장

노 선 명	공 사 구 간	공 사 명	시 행 자	공 사 기 간
서울특별시장	대방동 44-136- 17-26	영화국교주변 하천복개 및 도로포장공사	동작구청	83.2.1- 7.30
"	사당동 202-321	사당 4 동 202-321 간 도로포장공사	"	83.2.1- 8.30
"	상도동 669-126	상도 1 동 669-126 간의 2 개소 포장공사	"	83.2.1- 6.30
"	신대방동 656-2- 645-10	신대방 전철역 진입로 포장공사	"	83.2.1- 6.30

노 선 명	공 사 구 간	공 사 명	시행자	공사기간
서울특별시장	사당동 382-15-131	사당동 382-15-131 하수도	동작구청	83.2.1-5.30
·	사당동 190-186	사당4동 190-186(해방단지) 도로개설공사	·	83.2.1-10.30
·	혹석동 207-212	혹석1동 207-212 간 하수도공사	·	83.2.1-4.30

○ 도 면 생 략

위와같이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니 본 구간내 지하매설물(전화, 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) 등 유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는 본 공사기간 중에 시행토록 하시기 바랍니다.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3호

사회단체 지부 등록 취소

다음 사회단체를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제 8 조제 1 항 3 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그 등록을 취소한다.

1983. 1. 11

서울특별시장

○ 등록취소 단체명

등록일자	등록번호	단체명	대표자	소재지	취소사유
78.2.23	78	전국웅변협회 서울특별시지부	강수암	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72-1	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제 8 조 1 항제 3 호